

1. 개정 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 (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 나. 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을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국시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로 하고 후단 및 각 호는 삭제한다. 제29조의3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장을 “국시원”이라 한다.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국시원”으로 한다.

제29조6제1항 시험실시기관을 “국시원”으로, 제2항 현금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각 호는 삭제한다.

제29조의9제1항 및 제2항 요중 시·도지사를 “국시원”으로 하고, 제3항 후 단을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 제20호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발급 재발급	30일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현장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소	연락처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합격여부			평가점수(평균)		
비 고			실습지도자		——(자필서명)
			실습기관장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12. 30.>	<삭제>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	

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시원은----- ----- ----- -----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은 ----- ----- ----- ----- ----- ----- -----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

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국시원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 ~ 6. (생략)
②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u>국시원</u>은----- -----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u>자격증 발급 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	③----- ----- -----

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u>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이하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u>1월 1일부터 시행한다.</u>